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공고

도내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생계지원을 통해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6.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경영위기 소상공인 대상 폐업 충격완화 및 재도전 기회 제공
하여 재기율 향상 및 지역 경제위기 대응 기여
- 사업기간 : 2026년 1~12월
- 지원규모 : 3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도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폐업일 : '25. 1. 1. 이후
※ 23~26년 경기도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기수해자, 신청업체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지원
 - ※ **【사업정리 컨설팅】** 소상공인 수요 맞춤 분야별 전문 1:1 컨설팅 제공
 -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1개사 200만원)
- 접수기간
 - (모집공고) 2026. 4. 6.(월요일) ~
 - (신청·접수) 2026. 4. 13.(월요일)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 접수 이후 컨설팅 수수료 및 필수서류 최종 제출 순으로 예산 내 지원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ggbaro.kr) → 지원신청 → "간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
 - ※ "간편접수"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접수 진행

2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필수) : 소상공인 희망 분야 전문컨설팅 제공(5개 분야)

⇒ 컨설팅 분야 5개 중 신청자 희망분야 선택 후 1:1 대면 컨설팅 제공

분야	지원내용
창업	· 재창업 소상공인 창업아이템 개발·선정 · 성장가능성, 사업자능력 등 평가 및 분석
경영	· 사업체 수익현황, 상권분석, 경영마인드 등 평가분석 · 경영진단, 마케팅 전략, 점포경영 등 평가분석
직업	· 소상공인 적성, 자질, 사회적 능력 등 평가 및 분석 · 직업정보 제공, 직업 선택, 구직 계획 및 활동 검수 등
심리	· 심리적 부적응, 생활의욕, 사회적 인지능력 평가 및 분석 · 심리상담 수행으로 삶의 의욕 증진, 대인관계 개선, 성취욕구 강화 등
금융	· 사업체 자산운용 현황, 가계손익 현황, 가치평가 및 분석 · 폐업자 부채현황,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평가 및 분석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1개사 200만원)

3

대상선정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지 원 기 준	1.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25년 1월 1일 이후 또는 폐업 예정인 자 * [별표 제1호] 참조
	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별표 제2호] 참조
	4. 경기도에서 사업운영일이 180일 이상(6개월)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기준
	5. 다중사업자*가 아닌 소상공인 *신청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충족(기준중위소득 1인 130%, 그 외 100%) 및 컨설팅 수료자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활용함

⇒ 소득판정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평균**이 기준중위소득 1인 130%, 그 외 100% 이하인 경우

※ **【컨설팅 수료자】** '26년 사업정리 컨설팅 최소 1회 이행 후 만족도 평가 제출한 자

《 '26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00% 》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34,000	120,883	47,4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출처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30% 이하 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법(예시)

구분	확인 방법	세부 내용
1단계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가구원 수 확인 (예: 3인 가구)
2단계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월평균 합산	· 직전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을 3으로 나눈 월평균 금액 산출 (예: 3인 합산 3개월 총 45만원→월평균 15만원)
3단계	기준표 확인 및 비교	· 공고문 기준 가구원 수별 산정 기준표 이하 소득기준 충족 (예①: 3인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시, 기준 137천원 이하→충족(선정) 예②: 3인 혼합(직장+지역) 구성 시, 기준 197천원 초과→미충족(미선정))

□ 선정제외 : 중복 수혜자 및 미폐업자,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 선정 제외

제외기준	1. 선정기준 미해당(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컨설팅 미수료)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 수혜기간 : 최근 3년('23~'25년) 및 당해연도('26년)
	- 수혜사업 : ①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②경기도 소상공인 새출발 재기지원 사업(재기장려금, 경영환경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3. 폐업사실증명원 미제출자
	4.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폐업일 기준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자

□ 선정취소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 필수제출 : 필수서류만 제출하여 사업신청 가능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필수서류	1. 사업 신청서	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제2호
	3. 지원대상 확인서	서식 제3호
	4.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해당 시	· 위임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서식 제4호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추가제출 : 추가서류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 생략 가능(추후 제출)

※ 단, 접수이후 세부 안내에 따라 **폐업사실증명원 포함 추가서류 제출완료 시에만 선정심사 진행**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추가서류	5.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6. 주민등록표등본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등본상 가구원 전체 자료 제출
	8.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0.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조회기간 : 폐업일 기준 전년도
11.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해당 시	· 폐업사실증명원	· 신청단계 미제출자(폐업예정자)
대체서류	【건강보험 관련 대체서류】 *등본상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 : 출입국관리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신청자별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

□ 서류발급처

구분		발급처	문의처
사실증명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세무서	정부24 ☎1588-2188
주민등록표등본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1588-218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온라인)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정부24 ☎1588-2188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577-1000
과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 정부24, 홈택스	정부24 ☎1588-2188
면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오프라인)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5 지원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경상원 선정심사 ⇒ 컨설팅 수행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지급

신청·접수	⇒	선정자격 적격심사	⇒	컨설팅 수행	⇒	사업지원금 지급
· 경기바로 신청 - 컨설팅 희망분야 선택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적격심사 - 추가서류 미제출자 별도 안내 및 제출		컨설턴트 배정 및 컨설팅 수행 - 컨설턴트 개별연락		컨설팅 수료자 대상 재기장려금 지급 - 지급승인 안내 후 3주 이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컨설턴트→소상공인		경상원→소상공인

□ 추진방법

- (사업정리 컨설팅) 컨설턴트 개별연락 및 컨설팅 일정 협의 후 1:1 방문
- (사업지원금)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재기장려금 입금

□ 추진일정

- (컨설턴트 배정) 경기바로 접수완료 알림톡 수신 후 2주 이내
- (선정결과) 컨설팅 수료 및 추가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 (재기장려금 지급) 지급신청 승인 알림톡 수신 후 3주 이내(예정)

※ 신청 인원 집중 시, 사업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및 신청자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 제출 후 지정기한(60일) 이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점에 따라 필수서류 미제출자 및 컨설팅 미수료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18:00)

[서식 제4호]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위 임 장

수 임 인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임자와 관계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위 임 사 유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선정 시 지원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위 임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위 임 인 (공동사업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위 임 인 (공동사업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제출서류 :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별표 제1호]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스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 제2호]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축산업	01299中	개식용 사육업
제조업	10111中	개식용 도축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1	-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도매 및 소매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5中	개식용 도매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13中	개고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12中	개고기 소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업	561中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2中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단, 아래의 경우 지원 가능)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의 경우, 소상공인대환자금(SC) 또는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HM)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